직위공모제 운영지침

제정 2009. 8.17.

개정 2013. 9. 1.

개정 2014. 7. 17.

개정 2022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직제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4.7.17.>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전문직위"라 함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진흥원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.
- 2. "내부직위"라 함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직원 중에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
- 제3조(직위 지정)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자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와 내부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직무수행요건의 설정)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의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·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
- 제5조(선발심사) ①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한다.
 - ③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6조(심사위원회) ①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·면접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의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. ③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.

- 제7조(임용절차) 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, 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.
- 제8조(임용방법)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은 계약에 의한 직원으로 한다. 다만, 직원이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·승진의 방법에 의한다.
- 제9조(임용기간) ①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임용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하되,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② 원장은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서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22.12.23.>
 - ③ 임용기간 연장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<신설 2022.12.23.>
- 제10조(전문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) ① 전문직위 임용 당시 직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장은 그 직원을 원 직위 또는 원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전문직위 임용 당시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된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1조(공개모집의 예외) 원장은 직위 공모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.
- 제12조(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) ① 진흥원의 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②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3조(연봉의 산정) 전문직위에 대한 연봉산정은 외부임용 또는 내부직원 임용과 관계 없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7. 17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2. 23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